

## 우리 회사도 해외 위조상품 있을까?...무료 진단 실시

- 특허청 ‘국산 상표(K-브랜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사전진단’ 참여기업 모집 -
- 중국 등 8개국 21개 전자상거래 장터(플랫폼) 내 위조상품 유통실태 조사 제공 -
- 위조상품 발견 시, 민간 위조상품 조사(모니터링) 전문서비스로 연계 지원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우리 수출기업들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위조상품 피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구제받을 수 있도록 ‘국산 상표(K-브랜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사전진단’ 신청기업을 4월 17일(월)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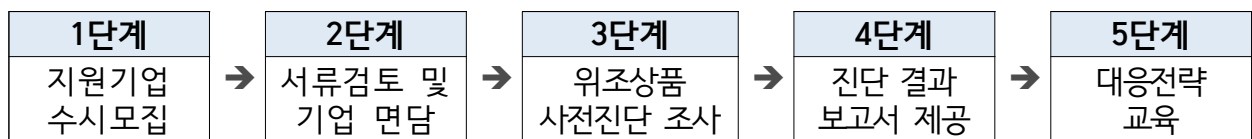
‘국산 상표(K-브랜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사전진단’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위조상품 전문가가 무료로 중국·동남아 주요 국가\*의 21개 전자상거래 장터(플랫폼\*\*)를 대상으로 약 3개월 동안 신청기업의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실태를 조사하고, 진단보고서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총 8개국

\*\* 알리바바, 라자다, 쇼피, 토코피디아 등 21개

해외에서 위조상품이 유통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국내 수출(예정) 기업은 누구나 국산 상표(K-브랜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사전진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 【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사전진단 서비스 지원 절차 】



위조상품이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된 기업에게는 후속 조치로 민간의 온라인 위조상품 조사(모니터링) 전문업체를 이용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조사(모니터링)·차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조사(모니터링)·차단 서비스’는 6개의 민간 전문업체와 협력하여,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현황을 실시간 감시하고 차단하도록 지원한다. 나아가,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해외 현지단속·소송제기 등을 위한 ‘국산 상표(K-브랜드) 대응전략’도 지원한다.

\* 리엑트, 리팡아거스, 마크비전, 아이피스페이스, 위고페어, 페이커즈 등 총 6개 업체(가나다순)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사전진단은 무료로 제공하는 만큼, 영세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위조상품 피해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해외 위조상품 피해가 의심되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산 상표(K-브랜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사전진단’ 사업은 ‘해외 국산 상표(K-브랜드) 보호 포털(www.ip-navi.or.kr/kbrands)’을 통해 4월 17일 (월)부터 10월 6일(금)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02-6196-2051)으로 문의하면 된다.

※ 붙임 1. 해외 위조상품 사전진단·차단 전문서비스 개요  
붙임 2.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사례

담당 부서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분쟁대응과	책임자	과 장	한덕원 (042-481-5182)
		담당자	사무관	장성국 (042-481-5999)



해외 위조상품 사전진단 서비스(무료)

◆ 해외 진출 국가에 위조상품 유통 현황 파악이 어려운 K-브랜드 기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및 대응전략 안내 서비스 무료 제공  
 ※ 중국, 동남아 총 8개국, 21개 사이트(알리바바, 라자다, 쇼피, 토코피디아 등)

- 지원대상 : ①국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우리기업, ②해외 수출 국가 내 1개 이상 출원 또는 등록된 지식재산권 보유(우선 지원)
- 추진절차 : 지원사업 신청 → 심사·선정 → 조사 및 보고서 제공

해외 위조상품 차단 전문서비스(정부지원금+기업부담금)

◆ 해외진출 국가에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K-브랜드 기업을 대상으로 위조상품 모니터링·차단신고·사후관리 ONE-STOP 서비스 제공  
 ※ 중국, 미국, 유럽, 아세안 등 100여개 국가 및 1,600여개 온라인플랫폼

- 지원대상 : ①국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우리기업, ②해외 수출 국가 내 1개 이상 등록된 지식재산권 보유(상기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추진절차 : 지원사업 신청(수행기관 선택) → 심사·선정 → 협약체결

신청방법

- 해외 K-브랜드 보호 포털([www.ip-navi.or.kr/kbrands](http://www.ip-navi.or.kr/kbrands))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 및 상담 문의	지재권분쟁대응본부 해외전략실	책임자	실 장	이훈범 (02-6196-2050)
		담당자	팀 장	홍석원 (02-6196-2051)

- K-브랜드 위조상품 유형은 ① 정품의 상표 위조, ② 정품 외관모방, ③ 정품 외관·포장의 캐릭터·표지 등 모방, ④ 한류편승 행위

위조상품 지재권 침해유형	실제 대응사례			
	정품(등록권리)		위조상품	
① 정품의 상표 위조 (상표권 침해)	 등록상표			
② 정품 외관 모방 (디자인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				
③ 정품의 외관·포장의 캐릭터나 표지 모방 사용 (저작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				
④ 한류편승 행위 (한국기업의 제품으로 위장)	<매장간판에 KOREA 표시> 		<판매상품에 한국어 표시> 	